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위원장
람	

제1374호 2018. 7. 30(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98호 하천 점용허가 고시 ----- 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00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2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01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고시 ----- 5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092호 도시관리계획(경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열람·공고 ----- 6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093호 도시관리계획(연희3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열람·공고 ----- 8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096호 견인보관소 장기 미 반환 차량 강제처리(폐차) 공시송달 공고 ----- 11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105호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안) 열람·공고 - 13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108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 15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109호 금곡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공고 ----- 17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111호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8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8-98호

하천 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하천점용허가의 고시)에 의하여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7. 3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하천의 명칭 : 검단천(지방하천)
가. 허가 번호 : 제2018 - 01호
나. 허가년월일 : 2018. 07. 19.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주식회사 아이케이
나. 주 소 : 인천 서구 검단천로 *** (오류동)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하천수 사용을 위한 취수시설의 설치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인천 서구 오류동 1143-3번지 외 2필지
나. 면 적 : 5m²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9. 1. ~ 2019. 8. 31.(1년)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8-100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7. 3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변경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중봉대로 783-2 외 3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유
		별도 열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8. 07. 30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18-07-30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350-55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 783-2 (경서동)	20180730	서구 4대 재래시장의 하나인 거북시장 및 거북골을 관통하는 도로	
2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350-288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 781-2 (경서동)	20180730	검암의 옛 지명인 검바위에서 명명	
3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350-289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 783 (경서동)	20180730	인천의 대표적 향구인 북향을 지나는 도로	
4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0	인천광역시 서구 가현로 76 (마전동)	20180730	가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409-7	인천광역시 서구 검바위로 81 (검암동)	20180730	검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1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51-18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 224 (심곡동)	20180730	검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5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	인천광역시 서구 시천동 82-9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로 881 (시천동)	20180730	서곶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5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12-137	인천광역시 서구 한서로 38 (백석동)	20180730	울우물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9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12-135	인천광역시 서구 한서로 36-8 (백석동)	20180730	청라커널로의 시작점에서 2,8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0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460-14	인천광역시 서구 간재울길 48-5 (검암동)	20180730	보석로12번길에서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1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384	인천광역시 서구 도요지로189번길 99 (검암동)	20180730	북향로 시작지점에서 약2,0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2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147-8, 147-11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로99번길 18-8 (마전동)	20180730	북향로 시작지점에서 약2,0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3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12-139, 212-104	인천광역시 서구 한서로53번길 40 (백석동)	20180730	북향로 시작지점에서 약 3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4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 785 (경서동)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 781 (경서동)	20180723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으로 금산 싸움에서 7백 의병과 함께 전사한 조현선생의 호를 따서 제명	
15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1-22	인천광역시 서구 북향로 28-7 (원창동)	20180723	인천의 대표적 향구인 북향을 지나는 도로	
16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117-1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 350 (연희동)	20180723	심아풀이 많아 심아고개로 불렸던 승학고개의 이름을 따 명명	
17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582-1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8로 5 (오류동)	20180723	우리구 해님이 명소 정서진 명칭을 반영한 정서진로에서 분기되는 여덟번째 도로	
18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4-75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326번길 37-11 (왕길동)	20180723	검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2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9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4-109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326번길 35-66 (왕길동)	20180723	검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2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0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848-6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로40번길 9 (원당동)	20180723	고산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1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900-9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188번1길 8 (마전동)	20180723	완정로188번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첫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22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900-16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188번1길 6 (마전동)	20180723	완정로188번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첫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23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725-16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228번안길 16-1 (금곡동)	20180723	완정로228번길의 안쪽으로분기되어있는도로	
24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817-11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835번길 20 (원당동)	20180723	원당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3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5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33-5, 33-6	인천광역시 서구 가현산로23번길 16-3 (마전동)	20180723	가현산로 시작지점부터 약 2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26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40-16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173번길 18-12 (청라동)	20180723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27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76-4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162번길 4-10 (청라동)	20180723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28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85-58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14번길 33 (가좌동)	20180723	염곡로 시작지점에서 약140m지점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9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3-193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193번길 71 (원창동)	20180723	북항로 시작지점부터 약 1,930m 지점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0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3-231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193번길 115 (원창동)	20180723	북항로 시작지점부터 약 1,930m 지점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1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3-217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193번길 99 (원창동)	20180723	북항로 시작지점부터 약 1,930m 지점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2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3-238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193번길 123 (원창동)	20180723	북항로 시작지점부터 약 1,930m 지점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3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3-177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193번길 90 (원창동)	20180723	북항로 시작지점부터 약 1,930m 지점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4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3-164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193번길 108 (원창동)	20180723	북항로 시작지점부터 약 1,930m 지점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5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3-168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193번길 104 (원창동)	20180723	북항로 시작지점부터 약 1,930m 지점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6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3-19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193번길 119 (원창동)	20180723	북항로 시작지점부터 약 1,930m 지점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8-101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고시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7. 3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명 : 원당동 검단신도시 AB15-2블록 공동주택(아파트) 신축
2. 사업주체 : 티에스주택(주) 대표 서완석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 가. 위치 : 인천광역시 원당동 AB15-2블록
 - 나. 대지면적 : 59,667㎡
 - 다. 사업규모 : 연면적 177,870.7514㎡(지하 2층, 지상 27층)
 - 라. 용도 : 공동주택 14개동(아파트 1,16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4.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1092호

도시관리계획(경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열람 · 공고

도시관리계획(경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7. 3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I.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있음)
 - 가. 일반용지(C)의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조서

가구 번호	가구면적 (㎡)	기 정			변 경(안)				
		획지		비 고 (획지분할 가능선)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지		비 고 (획지분할 가능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41	2,998.3	1	432.7	-	41	2,998.3	1	432.7	-
		2	441.9	-			2	441.9	-
		3	836.6	-			3	836.6	-
		4	537.8	-			4-1	278.8	-
							4-2	259.0	-
		5	345.5	-			5	345.5	-
		7	403.8	-			7	403.8	-

나. 일반용지(C)의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사유서

가구번호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41	4 → 4-1, 4-2	획지분할	효율적인 토지이용

4.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II.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1.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2. 의견제출 :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및 도면 : 게재 생략, 열람 장소에 비치
4.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560-4763)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1093호

도시관리계획(연희3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열람·공고

도시관리계획(연희3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 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7. 3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I.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있음)

가. 단독주택용지(B)의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조서

기 정				변 경(안)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지		비 고 (획지분할가능성)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지		비 고 (획지분할가능성)
		위치	면적(㎡)				위치	면적(㎡)	
37	7,525.0	1-1	181.0		37	7,525.0	1-1	181.0	
		1-2	184.1				1-2	184.1	
		1-3	188.9				2	1,239.3	2필지로 대지분할(권장)
		2	1,239.3	2필지로 대지분할(권장)			4	328.0	
		4	328.0				5	155.2	
		5	155.2				6-1	264.7	
		6-1	264.7				6-2	264.3	
		6-2	264.3				6-3	264.1	
		6-3	264.1				6-4	264.1	
		6-4	264.1				6-5	264.6	
		6-5	264.6				7	199.0	
		7	199.0				8	319.1	
		8	319.1				9	138.6	공동개발 (권장)
		9	138.6	공동개발 (권장)			10	132.1	
		10	132.1				11	233.4	
		11	233.4				12	351.2	
		12	351.2				13-1	235.1	공동개발 (권장), 도로37㎡
		13-1	235.1	13-2			198.2		
13-2	198.2		14	979.6					
14	979.6		15	171.8					
15	171.8		16-1	326.3					
16-1	326.3		16-2	351.0					
16-2	351.0		17	170.5					
17	170.5		18	120.8					
18	120.8								

나. 단독주택용지(B)의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사유서

가구번호	위치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37	1-3, 15 → 15	획지합병	효율적인 토지이용

4.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Ⅱ.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1.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2. 의견제출 :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및 도면 : 게재 생략, 열람 장소에 비치
4.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560-4763)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1096호

견인보관소 장기 미 반환 차량 강제처리(폐차) 공시송달 공고

우리구 관내 불법주정차로 견인되어(서구 견인보관소 경명대로265) 장기보관중인 미반환 차량소유자에게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 명령서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미거주, 이사감, 무단전출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7. 3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 고 기 간 : 2018년 7월 30일 ~ 2018년 8월 17일
2. 공 고 대 상 : 붙임참조
3. 공 고 명 칭 : 견인보관소 장기 미 반환 차량 강제처리(폐차) 공시송달 공고
4. 보 관 장 소 : 인천광역시 서구 견인보관소 (경명대로265, ☎032-571-7714)
5.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 주차관리과 (☎032-560-5944)
6.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 가. 자동차 소유자(점유자)가 공고기간 내에 차량을 인수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제6항에 의거 과태료 및 견인료를 납부하게 되며, 인수하지 않을 경우 동법 시행령 제14조(보관한 차의 매각 또는 폐차 등)에 따라 차량이 매각되거나 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이해관계인(저당권자 및 압류권자)은 공고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라며, 기간종료까지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우리 구에서는 이해관계인이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장기보관 차량을 강제처리(매각 또는 폐차)하고 일체의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 강제처리(매각 또는 폐차)되면 자동차에 적재된 물건도 함께 처분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1105호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안) 열람·공고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18. 7. 3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주요 내용

가. 시설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 2-934호선, 중로 2-935호선)

○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4번지 일원

○ 내용 :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2류 2개 노선) 신설

[폭원: 15m, 연장: 266m (2개 노선 규모 동일)]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중로	2	934	15	국지도로	266	대1-17	항만시설 경계	일반 도로	-	항만과 중복결정	
신설	중로	2	935	15	국지도로	266	대1-17	항만시설 경계	일반 도로	-	항만과 중복결정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사유서

도로명	결정 내용	결정 사유
중로 2-934	• B = 15m, L = 266m	• 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결정된 도로와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항만시설 내 획지의 접근성 확보를 위하여 도로 신설
중로 2-935	• B = 15m, L = 266m	

2.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 032-560-4762).

4.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갖추어 둠). 끝.

인천광역시서구 제2018-1108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1항 위반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22조(운행정지명령대상 자동차의 확인)에 의거 운행정지명령대상 차량으로 확인되었기에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7. 3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 고 기 간 : 2018. 7. 30. ~ 2018. 8. 13.(15일간)
2. 공 고 내 용

1. 행정처분 제목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2. 대상차량	등록번호	05너3537외 15건(붙임 참조)		
	차명			
3. 운행정지사유	소유자의 요청 등			
4.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5. 관할관청	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담당부서	교통민원과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심곡동) (☎ 032-560-4877, FAX 032-560-2793)		

3. 유의사항

-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2)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3)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이 가능하며 말소 등록된 자동차(무등록 자동차)를 운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서구청 교통민원과 차량관리팀 (☎ 032-560-487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

연번	자동차등록번호	소유자	운행정지명령 등록일	비고
1	05너3537	김정*	2018.07.23	
2	59라3594	조성*	2018.07.17	
3	25가7305	박주*	2018.07.17	
4	28러1754	박주*	2018.07.17	
5	인천33누1145	박수*	2018.07.16	
6	34너9783	송영*	2018.07.16	
7	52라5144	이재*	2018.07.10	
8	46부1273	추지*	2018.07.05	
9	07저9049	장철*	2018.07.05	
10	22루3443	장진*	2018.07.04	
11	43구0661	정인*	2018.07.03	
12	59라3360	황규*	2018.07.02	
13	91마1944	정경*	2018.06.29	2018.07.03. 해제
14	08머3804	이수*	2018.06.29	
15	46도9649	김순*	2018.06.29	2018.07.16. 해제
16	50고8078	황정*	2018.06.27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1109호

금곡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 지적 재조사사업 금곡1지구의 경계가 확정되어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7. 27.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 업 명 : 인천광역시서구 지적재조사사업 금곡1지구
2.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3.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367-1일원
4. 사업기간 : 2016. 6월 ~ 2018. 7월
5. 공고기간 : 2018. 7. 27. ~ 2018. 8. 11. (15일간)
6. 토지조서 : 인천광역시 서구청(지적재조사팀)에 비치

구 분	중전지적		확정토지		증감현황		비고
	필지수	면적(m ²)	필지수	면적(m ²)	필지수	면적(m ²)	
금곡1지구	565	1,236,370	607	1,237,254.6	증42	증884.6	

7. 관계서류의 열람

가. 관계서류 : 새로 작성한 지적공부, 경계점표지등록부, 측량성과결정을 위한 취득한 측량기록물 등

나. 열람기간 : 2018. 7. 27. ~ 2018. 8. 11. (15일간)

다.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 560-4664)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1111호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 7. 3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법리적 검토의견 적용 및 아동친화도시 기본원칙의 체계적 이행을 위한 관련조항 신설 등 일부개정으로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한 아동친화적 법체계 구축

2. 주요내용

- 법제처 권고사항에 따라 목적, 정의 개정 (안 제1조, 제2조)
 - 법령명 삭제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정식 제명으로 변경
- 아동권리 교육·홍보 및 아동인권 구제 관련조항 신설 (안 제10조의 2, 제10 조의3)
- 어린이 참여위원회 체계적 운영지원을 관련조항 정비 (안 제15조~제18조)
 - 청소년 참여위원회 관련조례 별도 제정으로 본 조례에서 관련조항 삭제
 - 어린이 참여위원회 구성인원 확대 및 관련조항 정비
-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 관련조항 정비(안 제23조, 제26조)
 - 당연직 위원 및 간사 직제 변경, 정기회의를 연2회로 개정

3. 의견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아동친화정책관, 전화 560-5756, 팩스 560-274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법리적 검토의견 적용 및 아동친화 도시 기본원칙의 체계적 이행을 위한 관련조항 신설 등 일부개정으로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아동친화적 법체계 구축

2. 주요내용

- 법제처 검토의견 적용 아동친화도시 목적 및 정의 관련조항 정비
(안 제1조, 제2조)
- 아동권리 교육·홍보 및 아동인권 구제 관련조항 신설
(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 어린이 참여위원회의 체계적 운영 지원을 위한 관련조항 정비
(안 제15조~제18조)
 - 청소년 참여위원회 관련조례 별도 제정으로 본 조례에서 관련조항 삭제
 - 어린이 참여위원회 구성 인원 확대 및 기능 관련조항 개정
-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위원 운영 관련조항 정비(안 제23조, 제26조)
 - 조직개편에 따른 당연직 위원 및 간사 직제 변경 등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적용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사항 없음 또는 “별지 참조”
- 라. 관계 법령 발췌 : “별지 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2018-1111호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이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여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도모하는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아동복지법」 제3조제1항”을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아동권리란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제5항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권리를 말한다”를 삭제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주요시책”을 “주요 시책”으로 한다.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아동권리 교육·홍보) ① 구청장은 아동권리 인식 확산을 위하여 아동, 아동보호자, 아동관계자, 공무원, 주민 등을 대상으로 지역 사회 아동권리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권리를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역사회 아동권리 교육 추진을 위해 아동권리교육 강사

를 자체 양성할 수 있다.

제10조의3(아동 인권침해 구제 등) ① 구청장은 아동의 인권침해 사건 발생시 독립적이고 신속한 상담 또는 구제조치를 위하여 아동인권담당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인권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아동인권 침해가 우려되는 고충 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 민원의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권고 및 의견 표명
3. 아동인권 관련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정제도에 대한 건의
4. 전문적인 상담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연계 등

제11조 제목“(아동 실태조사 실시)”를“(아동친화도 조사 실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실태”를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권,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환경, 가정환경 등 생활 전반에 대한 실태”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동영향평가”를 “아동영향평가”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 ·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 참여위원회”로 한다.

제15조 제목“(어린이 · 청소년 참여위원회 설치)”를“(어린이 참여위원회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 청소년 참여위원회(이하 “어린이 ·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참여위원회(이하 “어린이 참

여위원회”)”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참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어린이·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예산”을 “아동 정책 의견제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사항”을 “아동 권리 모니터링 및 개선사항 제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아동 인권 옹호활동 참여”를 신설한다.

제17조제1항 중 “·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참여위원회”로, “20명”을 “5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어린이로”를 “8세에서 13세까지 아동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참여위원회”로, “아동친화도시담당”을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참여위원회”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 청소년 참여위원의 임기는 2년”을 “참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4호 “특별한 사유 없이 정기회의 및 구정참여활동에 3회 이상 불참할 경우”를 신설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복지국장”을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담당”을 각각 “아동 업무 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부서장”을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4회”를 “2회”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를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이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여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도모하는데</u> -----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제2조(정의) ----- ----- --.</p>
<p>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p>	<p>1. -----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 -----.</p>
<p>2.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함으로써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는 지역으로 모든 면에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p>	<p>2.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 ----- ----- -----.</p>
<p>3. “아동권리”란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제5항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권리를 말한다.</p>	<p><삭 제></p>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생략)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생략)
-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 3. 4. (생략)

③ (생략)
<신설>

<신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현행과 같음)
- 2. ----- 주요시책
- 3.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아동권리 교육·홍보)

① 구청장은 아동권리 인식 확산을 위하여 아동, 아동보호자, 아동관계자, 공무원, 주민 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아동권리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권리를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역사회 아동권리 교육 추진을 위해 아동권리교육 강사를 자체 양성할 수 있다.

제10조의3(아동 인권침해 구제 등)

① 구청장은 아동의 인권침해 사건 발생시 독립적이고 신속한 상담 또는 구제조치를 위

제11조(아동 실태조사 실시)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
 키기 위하여 아동의 실태를 정
 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3조(아동영향평가 실시) ① 구
 청장은 아동 관련 정책 및 사업
 중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아동
 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하여 아동인권담당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인권담당
 관은 다음 각호의 역할을 수행
 한다.

1. 아동인권 침해가 우려되는
 고충 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 민원의 조사결과에 따
 른 시정권고 및 의견 표명
3. 아동인권 관련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정제
 도에 대한 건의
4. 전문적인 상담 및 지원이 필
 요한 경우 관련기관 연계 등

제11조(아동친화도 조사 실시) ①

 ----- 놀이와 여
 가, 참여와 시민권, 안전과 보
 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환
 경, 가정환경 등 생활 전반에 대
 한 실태--.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아동영향평가 실시) ① --

 ----- 아동
 영향평가-----

거쳐 아동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제4장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 · 청소년 참여위원회

제15조(어린이 · 청소년 참여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 · 청소년 참여위원회 (이하 "어린이 ·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둔다.

제16조(기능) 어린이 ·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아동의 관점에서 아동의 언어로 논의한다.

1. 어린이 ·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예산
2.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사항

<신설>

제17조(구성) ① 어린이 ·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연령과 성숙도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4장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 참여위원회

제15조(어린이 참여위원회 설치)

---- 참여위원회(이하 "어린이 참여위원회"-----

-----.

제16조(기능) -----참여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 정책에 대한 의견제안
2. 아동 권리 모니터링 및 개선 사항 제안
3. 아동 인권 옹호활동 참여

제17조(구성) ① ----- 참여위원회-----

그리고 성별을 고려하여 각각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어린이 참여위원회는 관내에 거주하거나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어린이로 구성하되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어린이 중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심사 · 선정한다.

③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관내에 거주하거나 관내 중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 구성하되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청소년 중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심사 · 선정한다.

④ 어린이 ·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담당이 된다.

⑤ 어린이 ·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정 인원의 아동 전문가를 배치한다.

제18조(위원 임기 및 해촉) ① 어린이 · 청소년 참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50
명 -----.

② -----

----- 8세에서 13세까지 아동
으로 -----

-----.

<삭 제>

④ ----- 참여위원회-----

----- 아동친화도
시 업무 담당-----.

⑤ ----- 참여위원회-----

-----.

제18조(위원 임기 및 해촉) ① --
-- 참여위원의 임기는 1년----

-----.

② (생략)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3. (생략)

<신설>

제23조(위원회 구성) ① (생략)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문화복지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 1. (생략)
- 2. 인천서부경찰서 담당 부서장
- 3.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담당 부서장
- 4. ~ 7. (생략)

③ (생략)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안동친화도시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②·③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특별한 사유 없이 정기회의 및 구정참여활동에 3회 이상 불참할 경우

제23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부서장-----

-----.

- 1. (현행과 같음)
- 2. ----- 아동 업무 담당 -----
- 3. ----- 아동 업무 담당 -----
- 4. ~ 7.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

<p>제26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4 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p> <p>② ~ ⑤ (생략)</p>	<p>제26조(회의) ① ----- 2회 ----- ----- ----- ----- -----.</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	---